

2018. 6. 21.(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18. 6. 25.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1-1”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자기설계전공의 설치 현황은 별표 1-2와 같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학융복합전공의 설치 현황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 제3항 중 “지도교수”를 “학과(부)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명을 “연계전공 설치현황(제15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설치현황 중 “공통사회”를 폐지하며, “공통과학”은 “통합과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기술창업학전공 연계학과에 “컴퓨터공학과, 경제학과”를 추가한다.

별표 1-2 제명을 “자기설계전공 설치현황(제18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 제명을 “산학융복합전공 설치현황(제19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명을 “전임교수 등의 교수시간(제3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체육부장”을 “체육진흥원장”으로 하며, “공학교육인증사업단장”을 삭제하고, “RC센터장, 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을 추가한다.

별표 3 제명을 “실점환산기준표(제40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명을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제63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를 삭제하며,
“NEW TEPS” 및 기준 점수 “379이상”, “309이상”, “255이상”을 신설한다.

별표 6 제명을 “LINC+사업단 참여학사조직(제75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제명을 “교양 선택과목의 전임교수 강의담당표(제22조제4항 관련)”
으로 한다.

“[별지 서식1]”을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서식1]” 로 한다.

“[별지 서식2]”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서식2]”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p>제15조(연계전공의 설치)</p> <p>① (생 략)</p> <p>② 연계전공의 설치 현황은 <u>별표1</u>과 같다.</p>	<p>제15조(연계전공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1-1</u> -----</p>
<p>제18조(자기설계전공 이수방법 등)</p> <p>① ~ ② (생 략)</p> <p><신 설></p>	<p>제18조(자기설계전공 이수방법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자기설계전공의 설치 현황은 <u>별표1-2</u>와 같다.</p>
<p>제19조(산학융복합전공의 설치)</p> <p>① ~ ② (생 략)</p> <p><신 설></p>	<p>제19조(산학융복합전공의 설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산학융복합전공의 설치현황은 <u>별표1-3</u>과 같다.</p>
<p>제33조(수강편람 제공 및 수강신청)</p> <p>① ~ ② (생 략)</p> <p>③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u>지도교수</u>의 지도를 받아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 략)</p>	<p>제33조(수강편람 제공 및 수강신청)</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학과(부)장</u>-----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후		
[별표 1-1] <u>연계전공 설치현황</u>			[별표 1-1] <u>연계전공 설치현황(제15조제2항 관련)</u>		
연계 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관	연계 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관
(생략)			(현행과 같음)		
공동사회 ※교직운영	사회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사학과	경제학과	<u><삭제></u>		
공동과학 ※교직운영	(생략)	(생략)	통합과학 ※교직운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미래기술 창업학전공	경영학부, 무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언론정보학과, <u><신설></u>	경영학부	미래기술 창업학전공	경영학부, 무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언론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제학과	경영학부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1-2] <u>자기설계전공 설치현황</u> (생략)			[별표 1-2] <u>자기설계전공 설치현황(제18조제3항 관련)</u> (현행과 같음)		
[별표1-3] <u>산학융복합전공 설치현황</u> (생략)			[별표1-3] <u>산학융복합전공 설치현황(제19조제3항 관련)</u> (현행과 같음)		
[별표 2] <u>전임교수 등의 교수시간</u>			[별표 2] <u>전임교수 등의 교수시간(제31조제1항 관련)</u>		
구분	책임 교수 시간	한정 교수 시간	구분	책임 교수 시간	한정 교수 시간
(생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후																																																														
구 분	책임 교수 시간	한정 교수 시간	구 분	책임 교수 시간	한정 교수 시간																																																												
박물관장, 보건진료소장, 공학 교육실습관장, 부속농장장, 부 속학술팀장, 동물자원연구센터 장, 부속동물병원장, 체육부장, 공동실험실습관장, 평생교육원 장, 교직부장, 공학교육혁신센 터장, 나노·신소재공학원장, 공 자학원장, 공학교육인증사업단 장, 과학영재교육원장, 중소기업 협력센터장, 창업보육센 터장, 공동동물실험센터장, 국 제언어교육원장, 기초교양교육 원의 센터장, 인재개발원의 센 터장, 정보분석센터장, <신설>	7	13	체육진흥원장, 공자 학원장, 과학영재교육원장, RC센터장, 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	7	13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3] 실점환산기준표 (생략)			[별표 3] 실점환산기준표(제40조제3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4]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별표 4]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제63조제2항 관련) <삭 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글로벌영어 인정단계</th> <th>(생략)</th> <th>TEPS</th> <th><신 설></th> <th>(생략)</th> </tr> </thead> <tbody> <tr> <td>면제</td> <td></td> <td>689이상</td> <td><신 설></td> <td></td> </tr> <tr> <td>4단계</td> <td></td> <td>572이상</td> <td><신 설></td> <td></td> </tr> <tr> <td>3단계</td> <td>(생략)</td> <td>476이상</td> <td><신 설></td> <td>(생략)</td> </tr> <tr> <td>2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글로벌영어 인정단계	(생략)	TEPS	<신 설>	(생략)	면제		689이상	<신 설>		4단계		572이상	<신 설>		3단계	(생략)	476이상	<신 설>	(생략)	2단계		-			1단계		-					<table border="1"> <thead> <tr> <th>글로벌영어 인정단계</th> <th>(현행과 같음)</th> <th>TEPS</th> <th>NEW TEPS</th> <th>(현행과 같음)</th> </tr> </thead> <tbody> <tr> <td>면제</td> <td></td> <td>689이상</td> <td>379이상</td> <td></td> </tr> <tr> <td>4단계</td> <td></td> <td>572이상</td> <td>309이상</td> <td></td> </tr> <tr> <td>3단계</td> <td>(현행과 같음)</td> <td>476이상</td> <td>255이상</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2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단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글로벌영어 인정단계	(현행과 같음)	TEPS	NEW TEPS	(현행과 같음)	면제		689이상	379이상		4단계		572이상	309이상		3단계	(현행과 같음)	476이상	255이상	(현행과 같음)	2단계		-			1단계		-				
글로벌영어 인정단계	(생략)	TEPS	<신 설>	(생략)																																																													
면제		689이상	<신 설>																																																														
4단계		572이상	<신 설>																																																														
3단계	(생략)	476이상	<신 설>	(생략)																																																													
2단계		-																																																															
1단계		-																																																															
글로벌영어 인정단계	(현행과 같음)	TEPS	NEW TEPS	(현행과 같음)																																																													
면제		689이상	379이상																																																														
4단계		572이상	309이상																																																														
3단계	(현행과 같음)	476이상	255이상	(현행과 같음)																																																													
2단계		-																																																															
1단계		-																																																															
[별표 5] (삭제 2012.11.27.)			[별표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후
<p>[별표 6] <u>LINC+사업단 참여학사조직</u> (생 략)</p>	<p>[별표 6] <u>LINC+사업단 참여학사조직(제75조의5 관련)</u> (현행과 같음)</p>
<p>[별표 7] <u>교양 선택과목의 전임교수 강의담당표</u> (생 략)</p>	<p>[별표 7] <u>교양 선택과목의 전임교수 강의담당표(제22조제4항 관련)</u> (현행과 같음)</p>
<p>[별지 서식1] (생 략)</p>	<p>■ <u>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서식1]</u> (현행과 같음)</p>
<p>[별지 서식2] (생 략)</p>	<p>■ <u>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서식2]</u>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2006. 03. 01	규정 제1270호	제24차 개정	2013. 05. 24	규정 제1584호
제1차 개정	2006. 08. 21	규정 제1302호	제25차 개정	2013. 08. 27	규정 제1594호
제2차 개정	2007. 02. 23	규정 제1320호	제26차 개정	2014. 02. 17	규정 제1617호
제3차 개정	2007. 06. 25	규정 제1334호	제27차 개정	2014. 03. 31	규정 제1628호
제4차 개정	2007. 12. 06	규정 제1346호	제28차 개정	2014. 06. 25	규정 제1640호
제5차 개정	2008. 02. 13	규정 제1349호	제29차 개정	2014. 08. 28	규정 제1644호
제6차 개정	2008. 07. 29	규정 제1368호	제30차 개정	2014. 12. 16	규정 제1662호
제7차 개정	2008. 10. 07	규정 제1381호	제31차 개정	2015. 02. 16	규정 제1678호
제8차 개정	2009. 02. 23	규정 제1392호	제32차 개정	2015. 02. 27	규정 제1682호
제9차 개정	2009. 07. 01	규정 제1417호	제33차 개정	2015. 07. 10	규정 제1705호
제10차 개정	2009. 09. 14	규정 제1423호	제34차 개정	2015. 09. 11	규정 제1717호
제11차 개정	2010. 02. 16	규정 제1432호	제35차 개정	2016. 02. 19	규정 제1735호
제12차 개정	2010. 11. 02	규정 제1462호	제36차 개정	2016. 06. 01	규정 제1760호
제13차 개정	2011. 02. 22	규정 제1470호	제37차 개정	2016. 08. 16	규정 제1767호
제14차 개정	2011. 05. 31	규정 제1479호	제38차 개정	2016. 09. 12	규정 제1771호
제15차 개정	2011. 07. 26	규정 제1486호	제39차 개정	2016. 11. 30	규정 제1781호
제16차 개정	2011. 09. 14	규정 제1489호	제40차 개정	2016. 12. 07	규정 제1786호
제17차 개정	2011. 12. 28	규정 제1498호	제41차 개정	2017. 02. 28	규정 제1797호
제18차 개정	2012. 02. 27	규정 제1511호	제42차 개정	2017. 05. 22	규정 제1806호
제19차 개정	2012. 08. 08	규정 제1531호	제43차 개정	2017. 06. 12	규정 제1811호
제20차 개정	2012. 11. 27	규정 제1540호	제44차 개정	2017. 11. 20	규정 제1827호
제21차 개정	2013. 01. 15	규정 제1551호	제45차 개정	2018. 2. 28	규정 제1839호
제22차 개정	2013. 05. 24	규정 제1583호	제46차 개정	2018. 6. 25	규정 제1839호
제23차 개정	2013. 05. 24	규정 제1583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에서 위임된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2조(교육목표) ①교양과정은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인격체를 갖춘 지성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②전공과정은 당해 전공(이하 “주전공”이라 한다)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9.7.1)

③기타 과정은 사회진출에 직접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의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라 함은 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다만, 이규정에서 총장·학장에 대한 보고·제정 절차에서 사용되는 학과장은 학과장 또는 학부장 등 모집단위의 장을 의미한다.
2. “배정정원”이라 함은 모집단위가 학부 또는 계열인 경우에 학부 또는 계열 내의 학과 또는 전공별로 배정된 입학정원을 말한다.

(조신설 2009.7.1)

제3조(교육과정의 구분) ①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②일반선택과정은 교양과정, 주전공의 전공과정을 제외한 과목을 말한다. 다만,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 영역의 최소소요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과정에 포함한다.

(개정 2009.7.1, 2015.2.16)

제4조(영역별 소요학점 및 이수학점) ①학과별 교육과정의 영역별 최소소요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②이수학점에는 교양과정, 전공과정(복수전공과정, 부전공과정, 연계전공과정, 자기설계 전공과정, 산학융복합전공과정 포함), 교직과정과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 또는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2016.2.19.)

③제2항에서 규정한 학점 이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당해 학점을 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 2 장 교육과정

제1절 교양과정

제5조(교양과정 편성) ①교양과정은 창의적 지식융합능력을 갖춘 지성인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7.1, 2014.2.17)

②교양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09.7.1, 2014.2.17, 2015.2.16)

1. 공통기초교양

2. 핵심교양
3. 전문기초교양
4. 일반교양
5. 특별교양

③영역별 교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양과정 이수방법) ①모든 학생은 공통기초교양에서 8학점, 핵심교양에서 9학점 이상 및 학과에서 지정한 전문기초교양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은 핵심교양 또는 일반교양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4.2.17, 2015.2.16)

②삭제 (개정 2007.12.6, 2014.2.17)

③삭제 (개정 2007.6.25, 2009.7.1, 2014.2.17)

④공통기초교양의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 과목의 이수학점과 교양과목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22, 개정 2014.2.17)

⑤교양과목 제공학과 소속 학생은 해당 과목의 수강을 제한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17.)

제2절 전공과정

제7조(전공과정 편성) ①전공과정은 학과에서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②다른 학과의 전공과정의 일부를 주전공의 전공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 3 절 복수전공

제8조(복수전공 이수대상 제한) ①다음 각 호의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1. <삭제> (2017. 2. 28.)
2.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개정 2009.2.23)
3. 법과대학 법학전공

4. 약학대학 각 학과
5. 의과대학 각 학과
6. 예술대학 회화과, 조소과 및 관현악과 (개정 2007.6.25, 2014.2.17)
7.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개정 2011.7.26)
8. <삭제> (2017. 2. 28.)
9. 간호대학 간호학과 (신설 2009.9.14.)
10. 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 (신설 2014.2.17. 개정 2018.2.28.)

②제1항 각 호의 학과 학생은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단, 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07.12.6, 개정 2014.2.17. 개정 2018.2.28.)

제9조(복수전공 이수방법) ①복수전공 학생은 제4조에 따로 정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기준 학점 수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복하여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5학점의 범위에서 주전공 및 복수전공 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5.2.16)

③제2항의 중복 과목 여부는 복수전공의 학과장이 판정한다.

④복수전공의 이수를 취소한 경우에 복수전공 관련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 과정으로 구분하여 졸업취득학점에 포함하되, 학과장의 판정에 의하여 전공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5.2.16)

제10조(복수전공 신청 및 승인) ①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수전공 이수지원서”를 주전공 학과장을 거쳐 복수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이수를 위한 복수전공의 경우는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해당학과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며, 연계전공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5, 2009.7.1, 2013.5.24)

②복수전공 학과장은 복수전공 이수 승인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없이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복수전공 승인 내역서”를 작성하여 당해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복수전공 변경 및 취소) ①복수전공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당해 복수전공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복수전공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복수전공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의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7.1.>

③복수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09.7.1.>

제 4 절 부전공

제12조(부전공 이수대상) ①부전공은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②제8조 제1항 각 호의 학과 학생은 다른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단, 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6., 2014.2.17. 개정 2018.2.28.>

③사범계학과 및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를 위한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부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이수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④ 삭제 <2012.11.27.>

⑤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업단의 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때 부전공명은 의약바이오전공, 융합공학전공으로 한다. <신설 2012.8.8., 개정2017.6.12.>

제13조(부전공 이수방법) ①부전공자는 제4조에서 따로 정한 주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기준 학점 수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부전공 이수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5.2.16>

③기타 부전공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제14조 (부전공 이수신청 및 승인 등)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같다. 다만, 이수 승인 인원은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 5 절 연계전공

제15조(연계전공의 설치) ①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하여 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 학과를 정하여야 하며, 주관 학과장은 별지 서식1의 “연계전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2016.2.19.>

②연계전공의 설치 현황은 별표1-1과 같다. <개정 2018. 6. 25.>

제16조(연계전공 주관 학과장) ①연계전공 주관 학과장은 연계전공을 주관하게 되는 학과장이 겸한다. <개정 2009.7.1.>

②연계전공 주관 학과장은 연계전공 운영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이 경우 주관 학과장은 참여 학과의 전임교수를 연계전공의 업무에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연계전공 이수방법 등) ①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목변경(2016.2.19)

다만, 제8조에서 정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 학생은 제외)은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4.2.17. 2018.2.28.>

②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참여 학과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가 가능하다. 다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③연계전공은 당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계전공의 이수방법은 제3절 및 제4절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방법과 같다. <개정 2009.7.1., 조 변경 2016.2.19.>

제 6 절 자기설계전공

제18조(자기설계전공 이수방법 등) ①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기설계전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기설계전공의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자기설계전공의 설치 현황은 별표1-2와 같다. <신설 2018. 6. 25.>

[조 변경 2016.2.19.]

제 7 절 산학융복합과정

제19조(산학융복합전공의 설치) ①2개 이상의 학과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신청은 별지 서식2의 “산학융복합전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9.>

② 산학융복합전공의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③ 산학융복합전공의 설치현황은 별표1-3과 같다. <신설 2018. 6. 25.>

[절 신설: 2016.2.19.]

제 8 절 교직과정

제20조(교직과정 이수 등) ①사범대학 소속학과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목 23학점이상과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의 기본이수영역과 관련하여 지정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평균 성적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공과목의 경우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의 경우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2.23., 2013.2.22., 2016.2.19.>

②재학 중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22.>

③교직과정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2.22.>

[절 변경: 2016.2.19]

제 9 절 평생교육사(2급)과정

제21조(평생교육사 과정 이수 등) ①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는 학과, 학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평생교육의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는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과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1. 2급 : 30학점 이상 <신설 2009.2.23.>

2. 3급 : 21학점 이상 <신설 2009.2.23.>

③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절 변경: 2016.2.19]

제 10 절 과목 설강 및 이수시기 등

제22조(설강) ①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과목이라도 설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전공과정은 학과별로 매 학기마다 51학점까지 설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하여 설강할 수 있다.

1. 전임교수가 9명 이상인 경우
2.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09.7.1., 2016.12.7.)

③설강된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교양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전공과목 및 기초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12.11.27)

1. 학년별 재학인원이 20명 이하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서 전공과목 및 기초과목 수강인원이 학년별 재학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개정 2007.12.6, 2012.11.27)
2. 연계전공 및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교양 선택과목을 3개 이상의 반으로 분반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수를 의무로 지정하여야 하며,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의 비율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다만, 공학교육 혁신센터(MSC필수 교과목 운영)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제23조(이수단위) ①이론과목은 주당 1시간(1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하고, 실험, 실습 및 실기 관련 교과목은 주당 2시간(1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의 교과목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수시기)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산학융복합전공, 교직과정은 제2학년 2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7.2.23., 2016.2.19)

제25조(과목이수 기본원칙) ①학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입학학년도에

편성된 당해 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09.7.1)

②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입학학년도 이후의 당해 학과의 교육과정을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되, 소정의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소정의 “교육과정 적용연도 변경자 명단”을 작성하여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③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같이 이수하는 경우에는 주전공의 교과과정 적용 학년도와 달리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⑤ 학생이 당해 학과의 변경전 교육과정과 변경후의 교육과정 중에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때에는 이를 전공필수과목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중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교양과목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초과목은 기초과목 중에서, 전공(선택)과목은 전공(선택)과목 중에서 학생 본인이 교과목을 지정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7.1)

제26조(재이수)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재산출한다. (개정 2008. 2.13)

②제1항에 따른 재이수과목의 성적은 A⁰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7.11.20.)

③재이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뒤에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F”로 평가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임의로 이수한 학생이 성적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소정의 “낙제(F급)교과목 재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변경 2017.11.20.)

[절 변경: 2016.2.19]

제11절 이수학점

제27조(이수기준학점) ① 학생이 매학기 이수할 수 있는 기준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양 과정의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 과목은 이수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1.12.28, 2013.5.24, 2014.2.17., 2017.2.28.)

졸업(수료)소요학점	이수기준학점	성적우수자 초과이수 학점 (직전학기 A ^o 이상인자)	비고
130학점 ~ 142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150학점 ~ 162.5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164학점 ~ 170학점	18학점 이내	21학점 이내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제외
164학점	26학점 이내	29학점 이내	의과대학 의학과
168학점	26학점 이내	29학점 이내	약학대학
72학점	21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 이수기준 학점의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의학과 및 수의학과
2.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과이수가 불가피한 경우
3. 약학대학 전학과 (신설 2011.2.22)

③ (삭제 2012.11.27)

④ 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성적 우수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1항의 이수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 범위 내에서 LINC+사업단에서 설강 또는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초과이수학점은 조기졸업 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8.8., 개정2017.6.12.)

⑤ 공과대학 학생이 기초학력강화를 위하여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제1항 이수기준 학점의 2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28조(이수학점의 취소)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점을 초과 이수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취득학점을 삭제한다. (개정 2009.7.1)

제29조(재·편입학 학생) ① 재·편입학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재·편입학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재·편입학자 학점인정표”에 의하여 사정한다.

② 재입학 학생이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1.75이상 이어야 학점 사정에 의한 인정학점과 인정과목으로 본다.

③ 편입학 학생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개 학기에 18학점(150학점 졸업대상학과는 20학점, 160학점 졸업대상학과는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편입학 학생의 인정 학점이 편입학 학년의 기준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 반드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 ⑤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판정 기준학점은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수료학점에 의한다.

제30조 (삭제 2009.7.1)

[절 변경: 2016.2.19]

제 3 장 수업 및 학적관리 등

제 1 절 수업관리

- 제31조(교수시간 등)** ①전임교수 등의 교수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각 대학원 논문 연구 교과목은 교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7., 2013.8.27)
- ②제1항에 의한 전임교수의 주당 책임교수시간은 학기당 학부 6시간 이상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수의 주당 책임교수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는 학기당 학부 3시간 이상을 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6.12.7.)
- ③전문·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7.)
- ④제1항의 책임교수시간에 미달하는 전임교수는 다음 학기 시작 전에 책임시간 미달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정교수시간을 초과하는 전임교수 등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7.29., 2012.11.27., 항 변경 2016.12.7., 개정 2017.11.20.)
- ⑤제4항에 의하여 책임교수시간에 미달하는 전임교수는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7., 항 변경 2016.12.7.)
- ⑥총장은 교수시간에 미달하는 전임교수에 대하여 승진, 재임용, 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 소속 학과에 대하여는 시간강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29, 2012.11.27., 2013.8.27., 항 변경 2016.12.7.)
- ⑦전임교수는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대학으로 출강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2012.11.27., 항 변경 2016.12.7.)

⑧여성전임교원은 출산 또는 직전·후 학기 중 한 학기에 한하여 주당 3시수(학점)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11.20.)

제32조(강의관리) ①수업은 따로 정한 수업시간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을 휴강한 때에는 주관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대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대학(원) 학(원)장은 보충강의 이행여부를 점검·관리하고, 매 4주마다 강의 상황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7.2.28.)

③강의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는 매 교시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격수업(K-MOOC 포함)은 강의대상과목을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20.)

제33조(수강편람 제공 및 수강신청) ①총장은 매학기별로 설강과목,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강의실 등이 기재된 수강편람을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담당교수는 담당과목의 강의내용 및 평가방법 등을 기록한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③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8.6.25.)

④이미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수강신청변경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⑤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허가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수강취소) ①수강 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당해 학기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소정의 “수강신청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와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②수강취소는 학기별 2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09.2.23, 2009.7.1, 2009.9.14)

제34조의2(강의평가) ①강의평가는 강의 중간평가와 강의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②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성적공시 기간에 강의 기말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③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 중간에 강의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조 신설 2011.9.14, 개정 2015.2.16., 2016.2.19.]

제 2 절 시험 및 성적관리

제35조(시험) ①시험은 수시평가제로 하며, 담당교수는 시험의 기간을 정하고 시험의 시간표는 시험 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2009.7.1)

②시험감독자는 주관대학 학장이 담당교수와 소속 전임교수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7.1)

③추가시험은 본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성적평가) ①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7.1)

등 급	A등급	B등급이상 (A등급+B등급)	C등급 이하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이상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6, 2012.8.8)

1. (삭제 2011.9.14)

2. 이론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

3. 교직과목

4. 평생교육사 과목

5. 군사학과목

6. (삭제 2012.11.27)

7. LINC+사업단의 과목 (신설 2012.8.8., 개정2017.6.12.)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개정 2012.8.8)

③ (삭제 2009.7.1)

제37조(휴가자에 대한 성적평가) ① 학생휴가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8.28., 향으로 변경 2017.11.20. 개정 2018.2.28.)

② 체육특기자는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 이상을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11.20.)

제38조(부정행위자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적발 당일로부터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으로 처분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0)로 처리하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과 그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과목 모두의 성적을 F(0)로 처리한다.

제39조(성적제출) ① 담당교수는 제36조에 의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 학기 수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학장은 그 명단을 당해학기 수업 종료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② 담당교수는 추가시험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학생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교수가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발표 후 5일 이내에 학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성적평점평균에 관한 실점) ① (삭제 2009.9.14)

② (삭제 2009.9.14)

③ 성적평점평균에 대한 실점(백분율점수)환산은 별표 3의 실점환산기준표에 의거 산출한다.

제41조(성적발표) 총장은 매 학기 취득성적을 개인별 성적표에 의하여 다음 학기 등록 개시 10일전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제3절 계절학기 운영

제42조(수강대상)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학생 중 제1학기 및 제2학기(이하 “정기학기”라 한다) 이외에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다만, 당해 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학생에 한한다. (개정 2009.7.1, 2012.11.27)
2.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다른 학교의 장이 승인한 학생 (개정 2009.7.1)

제43조(과목설강, 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교과목 설강은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과목의 경우 20명 이상, 전공과목 이외의 교양과목 등은 30명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2.11.27)

- ②수강대상 학생은 매 학기별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③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된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 ④수강신청 학생은 소정의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신청취소의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하되, 폐강과목과 계절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취소의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2.23, 2009.6.23)

1. 총 수업일수 3분의 1 경과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신설 2009. 2.23)
2. 총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신설 2009. 2.23)
3. 총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 : 수강료 반환 없음 (신설 2009.2.23)

⑤기타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업시간 및 평가관리) ①수업은 3주 이상으로 편성하되, 학점당 15시간(실험, 실습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7.5.22)

- ②담당교수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평가를 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방법은 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기학기에서 취득한 성적과 달리 관리한다.

제4절 학적관리

제45조(학적부 등 관리) ①총장은 입학(재·편입학을 포함한다)허가 후 60일 이내에 소정의

“학적부”를 작성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재입학 및 편입학 인원산정)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여석은 매 학년도 4월 1일자(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까지 재적생 변동사항) 및 10월 1일자(당해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적생 변동사항)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입학할 수 있는 여석의 수는 재입학 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학년도 총 제적자수에서 재·편입학자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인원을 산정한다. (개정 2007.12.6)
2. 편입학할 수 있는 여석의 수는 모집단위별로 직전학년도의 제1, 2학년 제적자의 수로 한다. 다만, 입학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다음해 입학으로 이월하여 선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인원을 포함한 인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47조(재입학 지원 및 승인)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재입학지원서”를 작성하여 재입학 지원 학과의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학장은 재입학지원서와 함께 학점인정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48조(편입학 지원)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대학 전학과, 의예과, 수의예과, 의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 2011.2.22., 2014.2.17. 2018.2.28.)

제49조 (삭제 2009.2.23)

제50조(입학허가예정자의 서류제출) 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는 따로 정한다.

제51조(전과 절차) ①전과 학생의 선발은 학장이 인원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9.7.1)

②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전과지원서”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 학장은 전과지원 학생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전과 관련 대학의 학장에게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관련 대학의 학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 후 소정의 “전과

지원자 학점인정표”와 “진과지원자 현황”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을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09.7.1)

③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소정의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한 자는 입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 읍, 면장의 입대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⑤학칙 제35조제3항의 교환학생은 그 선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삭제 2009.7.1.)

⑦학칙 제35조에 의한 창업휴학 학생에 대한 휴학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30.)

제53조(복학) ①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한 학생이 휴학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다만,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할 때에 제적처리한다. (개정 2009.7.1)

제5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55조(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5)

제 5 절 전공배정

제56조(전공배정 원칙 및 대상 학생) ①전공의 배정은 제2학년 진급 시 시행한다. (개정 2013.1.15))

②전공배정은 해당 학생의 지망상황, 학과의 수용능력,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모집단위 광역화 이전 학과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인원은 50% 이상으로, 최대인원은 120% 이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③전공배정 대상 학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9.2.23, 2013.1.15)

제57조(전공배정 계획 공고) 학장은 매 학년도 11월 첫째 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전공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0.2.16)

1. 전공배정 대상 학생
2. 전공배정 일정
3. 전공배정 신청기간(11월 30일까지) 및 절차 (개정 2009.7.1)
4. 제출서류
5. 전공배정 반영요소별 배점과 방법
6. 전공별 배정인원의 범위
7. 전공배정신청서 미제출 학생에 대한 처리 방법
8.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배정방법
9.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전공배정 신청 및 절차) ①전공배정 대상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전공배정 신청서”를 모집단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집단위의 장은 전공배정 계획에 따라 당해 모집단위의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정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한다.

③모집단위의 장은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의 전공을 지망비율이 낮은 전공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④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의 전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59조(전공배정 결과보고) 학장이 전공배정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정의 “전공 배정현황”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졸업

제60조(졸업논문) ①졸업논문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전공별로 시행하되, 당해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은 학과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학과장은 학과 교원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③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전 과정과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시행일 이전에 해당 학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⑤학과장은 졸업논문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결정 후 7일 이내에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졸업논문 시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 서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학과장의 책임 하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졸업인정 및 학위수여) ①졸업사정은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행한다.

②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소정의 “졸업사정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확정한다.

③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표시한다.

제61조의2(공학교육심화과정) ①학칙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학생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신설 2007.6.25, 개정 2008.1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부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심화과정 이수과 일반과정 이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화과정 이수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7)

제61조의3 (삭제 2012.11.27)

제61조의4(LINC+사업단 교육프로그램) ①LINC+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LINC+사업단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적부 및 각종 증명서 등에 LINC+사업단과정 이수과 일반과정 이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LINC+사업단 이수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2.8.8., 조개정2017.6.12.)

제62조(명예졸업증서 수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졸업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본교 학사과정 재학(적)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함으로써 부득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국가와 지역사회 및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정 규 교 육 과 정 외 학 점 인 정

제 1 절 영 어 능 령 인 정

제목 개정(2014.2.17)

- 제63조(영어능력인정)** ①학생이 재학 중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본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 포함)에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때에는 제6조에서 정한 교양과정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이수인정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 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1.15., 2014.2.17., 2017.2.28.)
- ②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은 별표4에 의한다.(개정 2009.7.1, 2013.1.15)
- ③삭제 (2013.1.15)
- ④삭제 (개정 2013.1.15, 2017.2.17)
- ⑤공인 영어능력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성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 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9.7.1, 2013.1.15)
- ⑥영어능력인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5)

제64조(성적우수자) TOEIC 기준 800점 이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권을 줄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2. 취업추천
3.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선발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2 절 사회체험활동

제65조(사회체험활동의 구분) 사회체험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7.1)

1. 백마인턴십 : 총장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내 기업체 등 기관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 해외체험활동
 - 가. 해외인턴십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체,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
 - 나. 해외어학연수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교육기관이나 어학기관에서 당해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는 활동 (개정 2009.7.1)
3. 학교기업 참여 (개정 2009.7.1.)
4. 창업(현장)실습 :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11.30.)

제66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 ①사회체험활동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을 무효로 한다. 다만, 백마인턴십 계절제의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입대체경비로 처리한다. (개정 2009.7.1)

②사회체험활동의 학점인정은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18학점을, 해외체험활동은 36학점을, 학교기업은 30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23학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1., 2016.11.30.)

③사회체험활동의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사회체험활동의 성적은 합격(P), 불합격(F)으로 평가하여 표기한다.

⑤사회체험활동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수기간 중에 무단 결근 또는 고의적인 업무방해 등으로 해를 끼쳐 학교로 통보된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백마인턴십과 해외체험활동의 정기학기제 이수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하는 학생은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⑦제65조의 사회체험활동 중 창업(현장)실습과 관련된 창업대체학점제, 창업교육학점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30.)

제67조 <삭제>(2017.5.22.)

제68조 <삭제>(2017.5.22.)

제69조(이수면제) 현장실습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학과의 학생이 백마인턴십을

이수한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09. 7.1)

제 70조 <삭제>(2017.5.22.)

제 71조 <삭제>(2017.5.22.)

제 72조(해외체험활동 과목 및 학점) ① 해외체험활동의 과목은 계절제와 학기제로 구분한다. (개정 2009.7.1)

② 계절제의 과목명 및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고 1학점 당 당해 방학중에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해외인턴십 I-1	3학점	해외어학연수 I-1	3학점
해외인턴십 I-2	3학점	해외어학연수 I-2	3학점
해외인턴십 I-3	3학점	해외어학연수 I-3	3학점
해외인턴십 I-4	3학점	해외어학연수 I-4	3학점
해외인턴십 I-5	3학점	해외어학연수 I-5	3학점
해외인턴십 I-6	3학점	해외어학연수 I-6	3학점
해외인턴십 II-1	6학점		
해외인턴십 II-2	6학점		
해외인턴십 II-3	6학점		

③ 학기제의 과목명은 해외인턴십 III라 하고 18학점을 인정하며, 정기 학기 중에 5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④ 과목의 이수순서가 번호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73조(해외체험활동 신청자격 및 이수대상 학생 확정) ① 해외체험활동 중 해외인턴십의 신청자격은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따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또는 당해 국가의 언어 능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7.1)

② 해외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해외체험활동 지원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확인한 후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4조(해외체험활동의 준용) 해외체험활동의 지도교수, 이수면제 및 성적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백마인턴십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

제 75조(학교기업 이수대상 학생 등) 학교기업에서의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백마인턴십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 3 절 의약바이오센터교육프로그램 (삭제 2012.11.27)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 (삭제 2012.11.27)

제 4 절 LINC+사업단 교육프로그램

제75조의5(참여학사조직) 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은 별표6과 같다.

(조신설 2012.8.8., 개정2017.6.12.)

제75조의6(수강신청 자격) LINC+사업단에서 설강하는 과목의 신청 자격은 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한다. (조신설 2012.8.8., 개정2017.6.12.)

제75조의7(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LINC+사업단에서 설강 또는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7.6.12.)

②제1항의 이수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12.8.8)

제 5 장 학생교류와 학점인정

제 1 절 다른 대학 수학

제76조(대상 및 인원) ①다른 대학(이 규정에서 다른 대학은 다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수학한 학점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에 따라 당해 학생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다른 대학에 수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의 성적평균평점이 1.75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외국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③다른 대학에 수학하는 인원은 매 학기 해당 학과의 모집정원 또는 배정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원격강의, 외국대학(이 규정에서 외국 대학은

외국의 다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수학하는 경우와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23, 2009.7.1)

제77조(수학승인 및 기간) ①다른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다른 대학 수학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확인한 후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다른 대학과 협의를 거쳐 수학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명단을 다른 대학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대학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수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되,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와 학기 개시일이 상이하여 본교의 학기 중간에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의 학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78조(과목이수 및 인정학점) ①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은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②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장이 외국에서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할 수 있다.

③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④복수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소속 학과에서 따로 정한 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이수자는 학기별(계절학기 포함)로 수학결과증명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수강예정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학과장은 수학결과증명서류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되, 성적환산 방법이 본교와 다른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에는 이수한 대학의 과목명을 등재하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한글 및 영어로 병기하고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기한다.

제79조(다른 대학 수학 납입금) 제77조에 의하여 수학 승인을 받은 학생은 수학기간에 속하는 학기의 납입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인 경우와 협정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0조(학위수여)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2 절 본교 수학

제81조(대상 및 인원) ①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다른 대학 학생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 정규 대학의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07.6.25)

②수학허가 인원은 당해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학과장이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허가 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2조(수학승인 및 기간) ①다른 대학의 장은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명단을 수강신청 개시일 1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된 후 당해 다른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수학이 허가된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④수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한 학생은 본교의 도서관, 학생생활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83조(취득학점) ①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는 당해 다른 대학에서 정한 방법 또는 학술교류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②학점의 평가 및 평정은 본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다른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84조(본교 수학 납입금) 수학이 허가된 학생의 납입금은 학술교류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계절학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학위수여) 국내외 다른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술교류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6 장 공개강좌

제86조(공개강좌) ①각 대학원 이외의 기관(부속시설)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중 국제언어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2.28.)

1. 개설목적
2. 공개강좌 명칭
3. 공개강좌 정원, 과목 및 강사
4. 개설장소 및 개설시간
5. 수강생 자격 및 선발기준
6. 수강료
7. <삭제> (2017.2.28.)

②공개강좌에 필요한 경비는 수강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는 대학회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2.19.)

③공개강좌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7 장 학사운영위원회 (개정 2009.7.1)

제87조(구성 등) ①이 규정에 의한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기초교양교육원장으로 하고, 각 대학(직할학부)장이 1인을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6, 2013.8.27)

③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8)

⑤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개설, 개편, 이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9.7.1)
2. 사회체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3. 학술교류에 관한 중요사항
4. 학사학위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6)
5. 기타 위원장이 학사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2.16)

②교양 교과목의 개설, 개편, 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초교양교육원 교양교육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교양교육원장이 학사운영위원회로 제출한다. (신설 2013.8.27)

제89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제 8 장 보 칙

제90조(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납입금) ①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31)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학부)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대학원)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졸업연기자의 납입금) ① 「충남대학교 학칙」 제70조의2에 따라 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 중 수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2015.2.27)

②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신설 2013.1.15)

③졸업연기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졸업연기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신설 2013.1.15)

④졸업연기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13.1.15)

(조신설 2011.5.31)

제91조(의학과운영) ①의과대학 의학과 의 운영을 위하여 기초의학분야와 임상의학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 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의과대학 의학과 각 교실의 주임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각 교실의 주임이 겸무한다. (개정 2009.2.23)

③ (삭제 2009.2.23)

제9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0호, 2006.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14조의 단서규정 중 사범계학과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교무규정, 충남대학교 공개 강좌 및 운영경비 관리 규정, 충남대학교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명예 졸업증서 수여규정, 충남대학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졸업논문 시행규정, 충남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백마인턴십 운영규정, 충남대학교 학생해외체험 활동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교양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충남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충남대학교 모집단위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

제3조(학사 관련 규정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폐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 본인 선택에 의하여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302호, 2006.8.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20호, 2007.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교직이수를 위한 이수신청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며, 제40조 제3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2학년도 제2학기 당시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34호, 2007.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중 관현악과의 복수전공 이수제한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중 단서조항은 부칙(규정 제1270호, 2006.2.28)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46호,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재적하는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제12조 및 제13조의 학문적 부진공을 이수할 수 있되, 이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기본이수 영역 관련 과목과 교과교육영역 2개 과목은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교직이수를 위한 부진공 이수 제한에 따른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사범계학과 학생 및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 학생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교직이수를 위한 부진공을 이수할 수 있되, 이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관련 과목과 교과교육영역 2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1349호, 2008.2.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68호, 2008.7.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별표 2중 신입교수의 교수시간 감면은 2008학년도 제2학기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81호, 2008.1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한 경우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392호, 2009.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56조의 규정 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제8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17호, 2009.7.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별표 4는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23호, 2009.9.14)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32호, 201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본 규정이 공포된 날 이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462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79호, 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6호, 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9호, 201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98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기준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2011년도 이전 신입학, 2013년도 이전 편입학, 재입학은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의 학기별 이수 기준학점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1511호, 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되는 글로벌이트레이드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글로벌이트레이드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531호, 2012.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2012.5.31.종료)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학점은 LINC+사업단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규정 제1540호, 2012.11.27)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연구기여교수는 2013학년도 선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551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자유전공학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규정개정으로 전공배정시기를 지난 학생은 2013년 1월까지 전공배정하며, 전공배정시기를 지난 학생 중 이 규정시행 당시 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 말에 전공배정한다.
②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의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의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제63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어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558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규정 제1583호, 2013.5.24)(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표에서 “130학점~140학점”을 “130학점~142학점”으로 한다.

부칙 (규정 제1584호, 2013.5.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94호, 2013.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617호, 2014.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27조,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제6조제4항의 교양과목 42학점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양과정 개편에 따른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교양과정

개편에 따라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영어 관련 교과목 중에서 6학점 이상, 국어 작문 관련 교과목 중에서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영역에 관계없이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개정된 공통 기초교양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②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4학년도 이후로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영어 관련 교과목, 진로설계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교양 이수학점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교과목	이수 조건	판정
기초글쓰기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1학점 이하 이수 또는 미이수	기초글쓰기 이수 대상
글로벌영어 (Global English) 1,2,3,4	영어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이수면제
	영어 관련 교과목 3학점부터 5학점까지 이수	4단계 이수 대상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이하 이수 또는 미이수	3단계 이수 대상
진로설계1,2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편)입학, 전과한 경우 및 3학년 내지 4학년이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2014학년도 이후로 변경한 경우	이수면제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편)입학, 전과한 경우 및 1학년 내지 2학년이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2014학년도 이후로 변경한 경우	진로설계1,2 이수 대상

※ 2013학년도 입학자가 ‘영어능력인정’을 받은 경우 영어 관련 교과목 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일정기준 이상 기준점수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정 제1628호, 2014.3.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직할학부에 관한 사항은 201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640호, 2014.6.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44호, 2014.8.28)

이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62호, 2014.12.16)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78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제4항, 제1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과정 개편에 따른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전공 교육과정 개편으로 기초과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 ②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15학점의 범위에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③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전공 학과의 전공 과목 중에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④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초·전공(공통,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은 학과장의 판정에 의하여 개정된 전공(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1682호, 2015.2.27)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05호, 2015.7.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17호, 2015.9.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35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 제1항은 2012학번부터 적용한다. 단, 시행일 당시 2학기 이상 교원양성과정인 남은 학생은 교직과목 2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학기 미만 남은 학생은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정 제1760호, 2016.6.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67호, 2016.8.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71호, 2016.9.12.)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81호, 2016.11.30.)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86호, 2016.12.7.)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806호, 2017.5.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811호,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LINC사업단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학점은 LINC+사업단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칙 (규정 제1827호, 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이수 성적 상한제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재적생 중 2018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839호, 2018.2.2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1857호, 2018.6.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1] (개정 2006.8.21, 2007.6.25, 2009.02.23, 2009.9.14, 2012.2.27, 2013.2.22., 2015.2.16., 2016.2.19., 2016.9.12.,2017.2.28., 2018. 2.28, 2018.6.25.)

연계전공 설치현황(제15조제2항 관련)

연 계 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관	연 계 전공명	연계학과(전공)	주관
목조건축및 인테리어 디자인	환경소재공학과,건축공학과	환경소재 공학과	국제학	영어영문학과,고고학과,사 회학과,언론정보학과,정치 외교학과,자치행정학과,경 영학부,무역학과,법학부	정치외교 학과
도덕·윤리 ※교직운영	철학과,교육학과	철학과	인문콘텐츠	국어국문학과,고고학과,철 학과,디자인창의학과	국어국문학과
<삭 제> 2018. 6. 25.			아시아비즈 니스	영어영문학과,중어중문학 과,일어일문학과,경제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통합과학 ※교직운영	화학과,물리학과,생물과학과,지 질환경과학과,해양환경과학과,응용 생물학과	해양환경 과학과	의약생명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동물 자원생명과학과,동물바이 오시스템과학과,약학과,제 약학과,수의학과,생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의 과학과(대학원)	약학과
중국통상	중어중문학과,무역학과	중어 중문학과	언어정보처리 전공	언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언어학과
스마트이트레 이드전공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무역학과	국방 무인시스템 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 퓨터공학과,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선박해 양공학과, 전기공학과, 전 파정보통신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지식생태전공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문헌 정보학과	환경ICT전공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감성인지소프 트웨어전공	심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심리학과	과채·특용 작물영농창업 전공	원예학과, 식물자원학과, 응용식물학과, 생물환경 화학과, 농업경제학과	원예학과
백제학 (신설 2017.3.1.)	국사학과, 고고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충청학 (신설 2017.3.1.)	국사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한문학과
미래기술 창업학전공	경영학부, 무역학과, 영어영 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언론 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경 제학과	경영학부	통일리더십과 개발협력전공	국사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행정학부, 언론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별표1-2] <신설 2018.2.28. 개정 2018.6.25.>

자기설계전공 설치현황(제18조제3항 관련)

자기설계전공 전공명	주관	설치
고전문화창의전공	한문학과	2018. 3. 1.
스포츠심리상담전공	스포츠학과	2018. 3. 1.

[별표1-3] <신설 2018.2.28. 개정 2018.6.25.>

산학융복합전공 설치현황(제19조제3항 관련)

산학융복합전공 전공명	참여학과 참여기관	주관
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학과, 화학공학교육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	사범대학 화학공학교육과

[별표2] <개정 2006.8.21, 2007.2.23, 2007.6.25, 2008.7.29, 2009.2.23, 2009.7.1, 2010.2.16, 2011.7.26, 2011.12.28, 2012.8.8, 2012.11.27, 2013.2.22, 2013.8.27, 2014.3.31, 2014.8.28, 2015.7.10., 2015.9.11., 2016.6.1., 2016.8.16., 2016.12.7., 2017.6.12., 2017.11.20. 2018.2.28., 2018.6.25.>

전임교수 등의 교수시간(제31조제1항 관련)

구 분	책임 교수시간	한정 교수시간
전임교수 (신설 2017.11.20.)	9	21
부총장, 처(실)장, 대학교병원장, 산학연구본부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전교교수회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정부재정지원사업총괄추진단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총장실장, 기초교양교육원장	3	10
학장		
1. 학생 편제정원 1,600명이상, 교원 수 80명이상, 10개학과 이상 대학 중 2개 조건 충족 대학장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3	10
2. 학생 편제정원 800명이상 1,600명 미만, 교원 수 40명이상 80명 미만, 5개학과 이상 10개학과 미만 대학장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4	11
3. 학생 편제정원 800명 미만, 교원 수 40명 미만, 5개학과 미만 대학 중 2개조건 충족 대학장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4.5	11.5
4. 직할학부(자유전공학부, 국가안보융합학부)	6	12
전문(특수)대학원장		
1. 법학전문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3	10
2. 학생 입학정원 기준 200명 이상, 300명 미만 대학원 [교육대학원]	4	11
3. 제1호 ~ 제2호 이외의 전문·특수 대학원장	5	12
부학(원)장		
1. 학(원)장의 책임시간이 3학점인 대학(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대학원]	6	12
2. 학(원)장의 책임시간이 4학점 이상인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전문(특수)대학원]	7	13
3. 직할학부(자유전공학부, 국가안보융합학부)	8	14

구 분	책임 교수시간	한정 교수시간
도서관장	4	11
정책연구단장	4.5	11.5
부처(실)장, 대학본부 부속시설 등의 부분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기초교양교육원 부원장, 정보통신원장, 신문방송사주간, 전교교수회 부회장, 전교교수회 사무처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부단장, 산학협력 중점교수, 원로교수, 학생생활관장, 연구기여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안전관리본부장	6	12
박물관장, 보건진료소장, 공학교육실습관장, 부속농장장, 부속학술림장, 동물자원연구센터장, 부속동물병원장, 체육진흥원장 , 공동실험실습관장, 평생교육원장, 교직부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나노신소재공학원장, 공자학원장 , 과학영재교육원장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공동동물실험센터장, 국제언어교육원장, 기초교양교육원의 센터장, 인재개발원의 센터장, 정보분석센터장, RC센터장 , 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	7	13
부설연수원장, 학생생활관 부관장, 학부장 및 계열부장, 학과장 및 전공주임, 도서관분관장, 대학교병원의 진료처장·교육수련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자연사박물관장, 공학교육혁신센터 전문위원, 과학영재교육원 지도교수	8	14
<삭제> (2017.11.20.)		
시간강사		12

- ※1. 학기 중 보직 변경 시 후임 보직교수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전임교수 중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지정(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중복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대학장이 관련 대학원장(특수전문 대학원장 포함)을, 부학장이 관련 대학원 부원장을 겸보하거나 또는 대학원장이 다른 대학원장을 겸보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추가로 감면하되, 책임 교수시간의 감면시간은 학(원)장은 6시간, 부학(원)장은 3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7.11.20.)
 4. 연구기여교수의 선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5. 원로교수는 만 64세(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 기준) 이상인 교수를 말한다.
 6. <삭제>(2016.12.7.)
 7. 기타 총장이 책임 있는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감면할 수 있다.

실 점 환 산 기 준 표(제40조제3항 관련)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4.500	100						
4.495~4.499	99.9	4.295~4.299	95.9	3.940~3.949	91.9	3.540~3.549	87.9
4.490~4.494	99.8	4.290~4.294	95.8	3.930~3.939	91.8	3.530~3.539	87.8
4.485~4.489	99.7	4.285~4.289	95.7	3.920~3.929	91.7	3.520~3.529	87.7
4.480~4.484	99.6	4.280~4.284	95.6	3.910~3.919	91.6	3.510~3.519	87.6
4.475~4.479	99.5	4.275~4.279	95.5	3.900~3.909	91.5	3.500~3.509	87.5
4.470~4.474	99.4	4.270~4.274	95.4	3.890~3.899	91.4	3.490~3.499	87.4
4.465~4.469	99.3	4.265~4.269	95.3	3.880~3.889	91.3	3.480~3.489	87.3
4.460~4.464	99.2	4.260~4.264	95.2	3.870~3.879	91.2	3.470~3.479	87.2
4.455~4.459	99.1	4.255~4.259	95.1	3.860~3.869	91.1	3.460~3.469	87.1
4.450~4.454	99.0	4.250~4.254	95.0	3.850~3.859	91.0	3.450~3.459	87.0
4.445~4.449	98.9	4.240~4.249	94.9	3.840~3.849	90.9	3.440~3.449	86.9
4.440~4.444	98.8	4.230~4.239	94.8	3.830~3.839	90.8	3.430~3.439	86.8
4.435~4.439	98.7	4.220~4.229	94.7	3.820~3.829	90.7	3.420~3.429	86.7
4.430~4.434	98.6	4.210~4.219	94.6	3.810~3.819	90.6	3.410~3.419	86.6
4.425~4.429	98.5	4.200~4.209	94.5	3.800~3.809	90.5	3.400~3.409	86.5
4.420~4.424	98.4	4.190~4.199	94.4	3.790~3.799	90.4	3.390~3.399	86.4
4.415~4.419	98.3	4.180~4.189	94.3	3.780~3.789	90.3	3.380~3.389	86.3
4.410~4.414	98.2	4.170~4.179	94.2	3.770~3.779	90.2	3.370~3.379	86.2
4.405~4.409	98.1	4.160~4.169	94.1	3.760~3.769	90.1	3.360~3.369	86.1
4.400~4.404	98.0	4.150~4.159	94.0	3.750~3.759	90.0	3.350~3.359	86.0
4.395~4.399	97.9	4.140~4.149	93.9	3.740~3.749	89.9	3.340~3.349	85.9
4.390~4.394	97.8	4.130~4.139	93.8	3.730~3.739	89.8	3.330~3.339	85.8
4.385~4.389	97.7	4.120~4.129	93.7	3.720~3.729	89.7	3.320~3.329	85.7
4.380~4.384	97.6	4.110~4.119	93.6	3.710~3.719	89.6	3.310~3.319	85.6
4.375~4.379	97.5	4.100~4.109	93.5	3.700~3.709	89.5	3.300~3.309	85.5
4.370~4.374	97.4	4.090~4.099	93.4	3.690~3.699	89.4	3.290~3.299	85.4
4.365~4.369	97.3	4.080~4.089	93.3	3.680~3.689	89.3	3.280~3.289	85.3
4.360~4.364	97.2	4.070~4.079	93.2	3.670~3.679	89.2	3.270~3.279	85.2
4.355~4.359	97.1	4.060~4.069	93.1	3.660~3.669	89.1	3.260~3.269	85.1
4.350~4.354	97.0	4.050~4.059	93.0	3.650~3.659	89.0	3.250~3.259	85.0
4.345~4.349	96.9	4.040~4.049	92.9	3.640~3.649	88.9	3.240~3.249	84.9
4.340~4.344	96.8	4.030~4.039	92.8	3.630~3.639	88.8	3.230~3.239	84.8
4.335~4.339	96.7	4.020~4.029	92.7	3.620~3.629	88.7	3.220~3.229	84.7
4.330~4.334	96.6	4.010~4.019	92.6	3.610~3.619	88.6	3.210~3.219	84.6
4.325~4.329	96.5	4.000~4.009	92.5	3.600~3.609	88.5	3.200~3.209	84.5
4.320~4.324	96.4	3.990~3.999	92.4	3.590~3.599	88.4	3.190~3.199	84.4
4.315~4.319	96.3	3.980~3.989	92.3	3.580~3.589	88.3	3.180~3.189	84.3
4.310~4.314	96.2	3.970~3.979	92.2	3.570~3.579	88.2	3.170~3.179	84.2
4.305~4.309	96.1	3.960~3.969	92.1	3.560~3.569	88.1	3.160~3.169	84.1
4.300~4.304	96.0	3.950~3.959	92.0	3.550~3.559	88.0	3.150~3.159	84.0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3.140~3.149	83.9	2.740~2.749	79.9	2.340~2.349	75.9	1.940~1.949	71.9
3.130~3.139	83.8	2.730~2.739	79.8	2.330~2.339	75.8	1.930~1.939	71.8
3.120~3.129	83.7	2.720~2.729	79.7	2.320~2.329	75.7	1.920~1.929	71.7
3.110~3.119	83.6	2.710~2.719	79.6	2.310~2.319	75.6	1.910~1.919	71.6
3.100~3.109	83.5	2.700~2.709	79.5	2.300~2.309	75.5	1.900~1.909	71.5
3.090~3.099	83.4	2.690~2.699	79.4	2.290~2.299	75.4	1.890~1.899	71.4
3.080~3.089	83.3	2.680~2.689	79.3	2.280~2.289	75.3	1.880~1.889	71.3
3.070~3.079	83.2	2.670~2.679	79.2	2.270~2.279	75.2	1.870~1.879	71.2
3.060~3.069	83.1	2.660~2.669	79.1	2.260~2.269	75.1	1.860~1.869	71.1
3.050~3.059	83.0	2.650~2.659	79.0	2.250~2.259	75.0	1.850~1.859	71.0
3.040~3.049	82.9	2.640~2.649	78.9	2.240~2.249	74.9	1.840~1.849	70.9
3.030~3.039	82.8	2.630~2.639	78.8	2.230~2.239	74.8	1.830~1.839	70.8
3.020~3.029	82.7	2.620~2.629	78.7	2.220~2.229	74.7	1.820~1.829	70.7
3.010~3.019	82.6	2.610~2.619	78.6	2.210~2.219	74.6	1.810~1.819	70.6
3.000~3.009	82.5	2.600~2.609	78.5	2.200~2.209	74.5	1.800~1.809	70.5
2.990~2.999	82.4	2.590~2.599	78.4	2.190~2.199	74.4	1.790~1.799	70.4
2.980~2.989	82.3	2.580~2.589	78.3	2.180~2.189	74.3	1.780~1.789	70.3
2.970~2.979	82.2	2.570~2.579	78.2	2.170~2.179	74.2	1.770~1.779	70.2
2.960~2.969	82.1	2.560~2.569	78.1	2.160~2.169	74.1	1.760~1.769	70.1
2.950~2.959	82.0	2.550~2.559	78.0	2.150~2.159	74.0	1.750~1.759	70.0
2.940~2.949	81.9	2.540~2.549	77.9	2.140~2.149	73.9	1.740~1.749	69.9
2.930~2.939	81.8	2.530~2.539	77.8	2.130~2.139	73.8	1.730~1.739	69.8
2.920~2.929	81.7	2.520~2.529	77.7	2.120~2.129	73.7	1.720~1.729	69.7
2.910~2.919	81.6	2.510~2.519	77.6	2.110~2.119	73.6	1.710~1.719	69.6
2.900~2.909	81.5	2.500~2.509	77.5	2.100~2.109	73.5	1.700~1.709	69.5
2.890~2.899	81.4	2.490~2.499	77.4	2.090~2.099	73.4	1.690~1.699	69.4
2.880~2.889	81.3	2.480~2.489	77.3	2.080~2.089	73.3	1.680~1.689	69.3
2.870~2.879	81.2	2.470~2.479	77.2	2.070~2.079	73.2	1.670~1.679	69.2
2.860~2.869	81.1	2.460~2.469	77.1	2.060~2.069	73.1	1.660~1.669	69.1
2.850~2.859	81.0	2.450~2.459	77.0	2.050~2.059	73.0	1.650~1.659	69.0
2.840~2.849	80.9	2.440~2.449	76.9	2.040~2.049	72.9	1.640~1.649	68.9
2.830~2.839	80.8	2.430~2.439	76.8	2.030~2.039	72.8	1.630~1.639	68.8
2.820~2.829	80.7	2.420~2.429	76.7	2.020~2.029	72.7	1.620~1.629	68.7
2.810~2.819	80.6	2.410~2.419	76.6	2.010~2.019	72.6	1.610~1.619	68.6
2.800~3.809	80.5	2.400~2.409	76.5	2.000~2.009	72.5	1.600~1.609	68.5
2.790~2.799	80.4	2.390~2.399	76.4	1.990~1.999	72.4	1.590~1.599	68.4
2.780~2.789	80.3	2.380~2.389	76.3	1.980~1.989	72.3	1.580~1.589	68.3
2.770~2.779	80.2	2.370~2.379	76.2	1.970~1.979	72.2	1.570~1.579	68.2
2.760~2.769	80.1	2.360~2.369	76.1	1.960~1.969	72.1	1.560~1.569	68.1
2.750~2.759	80.0	2.350~2.359	76.0	1.950~1.959	72.0	1.550~1.559	68.0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1.540~1.549	67.9	1.340~1.349	65.9	1.140~1.149	63.9	0.940~0.949	61.9
1.530~1.539	67.8	1.330~1.339	65.8	1.130~1.139	63.8	0.930~0.939	61.8
1.520~1.529	67.7	1.320~1.329	65.7	1.120~1.129	63.7	0.920~0.929	61.7
1.510~1.519	67.6	1.310~1.319	65.6	1.110~1.119	63.6	0.910~0.919	61.6
1.500~1.509	67.5	1.300~1.309	65.5	1.100~1.109	63.5	0.900~0.909	61.5
1.490~1.499	67.4	1.290~1.299	65.4	1.090~1.099	63.4	0.890~0.899	61.4
1.480~1.489	67.3	1.280~1.289	65.3	1.080~1.089	63.3	0.880~0.889	61.3
1.470~1.479	67.2	1.270~1.279	65.2	1.070~1.079	63.2	0.870~0.879	61.2
1.460~1.469	67.1	1.260~1.269	65.1	1.060~1.069	63.1	0.860~0.869	61.1
1.450~1.459	67.0	1.250~1.259	65.0	1.050~1.059	63.0	0.850~0.859	61.0
1.440~1.449	66.9	1.240~1.249	64.9	1.040~1.049	62.9	0.840~0.849	60.9
1.430~1.439	66.8	1.230~1.239	64.8	1.030~1.039	62.8	0.830~0.839	60.8
1.420~1.429	66.7	1.220~1.229	64.7	1.020~1.029	62.7	0.820~0.829	60.7
1.410~1.419	66.6	1.210~1.219	64.6	1.010~1.019	62.6	0.810~0.819	60.6
1.400~1.409	66.5	1.200~1.209	64.5	1.000~1.009	62.5	0.800~0.809	60.5
1.390~1.399	66.4	1.190~1.199	64.4	0.990~0.999	62.4	0.790~0.799	60.4
1.380~1.389	66.3	1.180~1.189	64.3	0.980~0.989	62.3	0.780~0.789	60.3
1.370~1.379	66.2	1.170~1.179	64.2	0.970~0.979	62.2	0.770~0.779	60.2
1.360~1.369	66.1	1.160~1.169	64.1	0.960~0.969	62.1	0.760~0.769	60.1
1.350~1.359	66.0	1.150~1.159	64.0	0.950~0.959	62.0	0.750~0.759	60.0
						0.750 미만	0

[별표 4] <개정 2007.12.6, 2009.7.1, 2012.11.27, 2013.1.15., 2014.2.17., 2018.6.25.>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제63조제2항 관련)

글로벌영어 인정단계	TOEIC	TOEFL			TEPS	NEW TEPS <신형 2018.6.25>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
		PBT	CBT	IBT						
면제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379이상	130이상	IM3이상	7이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4단계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
3단계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255이상	80이상	IM1이상	6이상	“
2단계	450이상	-	-	-	-		-	-	-	“
1단계	450미만	-	-	-	-		-	-	-	“

[별표 5] (삭제 2012.11.27)

[별표 6] <신설 2012.8.8, 개정 2013.5.24, 2014.6.25., 2015.7.10., 2016.8.16., 2017.6.12., 2018.6.25.>

LINC+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제75조의5 관련)

참여 학사조직(학부/학과(전공))		비 고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	
	미생물 분자생명과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응용생물학과	
	동물자원과학부	
	식품공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u>농업경제학과</u>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기계공학부	
	선박해양공학과	
	신소재공학과	
	<u>응용화학공학과</u>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u>건축학과</u>	
	<u>토목공학과</u>	
<u>환경공학과</u>		
약학대학	약학과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학과	
신약전문대학원	신약개발학과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화학과	
	<u>물리학과</u>	
	<u>천문우주과학과</u>	
	<u>지질환경과학과</u>	
	<u>해양환경과학과</u>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u>소비자생활정보학과</u>	
경상대학	경영학부(경영학과)	
	<u>무역학과</u>	
	<u>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u>	
인문대학	언어학과	
	중어중문학과	
예술대학	디자인창의학과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u>의과대학</u>	<u>의학과</u>	
<u>간호대학</u>	<u>간호학과</u>	
<u>의학전문대학원</u>	<u>의학과</u>	
<u>사범대학</u>	<u>건설공학교육과</u>	
	<u>기계·금속공학교육과</u>	
	<u>화학공학교육과</u>	

[별표 7] <신설 2013.8.27. 개정 2018.6.25.>

교양 선택과목의 전임교수 강의담당표(제22조제4항 관련)

전임교수 의무지정 강좌수	3~5강좌	6~8강좌	9~11강좌	12~14강좌
	1강좌 이상	2강좌 이상	3강좌 이상	4강좌 이상
	15~17강좌	18~20강좌	21~23강좌	24~26강좌
	5강좌 이상	6강좌 이상	7강좌 이상	8강좌 이상

※ 26강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강좌당 1강좌 이상은 전임교수로 의무지정 하여야 함.

연계전공 설치신청서

연계전공명	학위명	참여학과(전공)	주관학과(전공)	주관대학

연계전공을 위와 같이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교육과정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관학과(전공) :	학과장(전공주임)	(인)
참여학과(전공) :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주관 대학장(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산학융복합전공 설치신청서

산학융복합 전공명	학위명	참여학과(전공)	주관학과(전공)	참여기업명

산학융복합전공을 위와 같이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교육과정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관학과(전공) : 학과장(전공주임) (인)

 참여학과(전공) :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학과장(전공주임) (인)

 주관 대학장(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